

환경 정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성·신뢰성 향상된다.

<편집부>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훼손에 대한 사전예방제도로서 각종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환경영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괴적인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태동하게 되었으며, 그 후 환경보전법 개정, 1990년도의 환경영책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고 각종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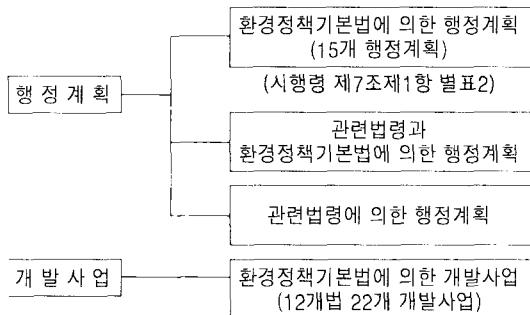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이전부터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환경영향평가제도 보다 앞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운영되어온 제도이다. 국토이용관리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과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개발계획 및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에 앞서 해당 행정관청 등이 미리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관

리부서(1979년까지 보건복지부, 1980년 이후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왔던 사전협의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예: 동강댐, 시화호 등)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 등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협의기간 지연사례, 부실 평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 정 보

지난 4월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협의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각종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평가 제도의 부실 평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최근 5년간 협의기관이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를 마치는데 사업당 평균 68.7일이 걸렸으나 그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 데 평균 115.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일부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협의가 끝난 뒤에 사업지구 주변에 습지나 야생보호동·식물이 발견되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가서 및 검토서의 작성, 협의 절차를 표준화·투명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협의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요 개선방안

환경부에서는 협의기간 지연과 부실 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04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현행 계획승인시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기고, 대안검토를 강화

- 5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대상사업에 추가

2. 땅,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04. 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확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요 평가·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 항목·범위확정 제도 : 사업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이를 충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협의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환경단체 등과 협동조사 및 검토 회의 실시 활성화

* 동해선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시민 단체 등과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서 작성·협의를 신속히 완료

- 협의 완료 후 미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검토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

3.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투명화·표준화 함으로써 효율성·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빈번한 보완사유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협의로 갈음하여 보완을 최소화

- 다만,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는 조기에 반려 조치

-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 매뉴얼과 평가서 검토·협의 편람을 구체적으로 제작하여 업무 절차를 표준화

- 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환경 정보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적극 공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평가서 초안에 그 협의 내용의 반영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공개-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시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불필요한 구
비서류 첨부시 반려, 구비서류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토서 작성매뉴얼 마련)- '04. 7월부터 평가서 작성 대행계약 분리발주
를 의무화하여 평가 대행비용 저가수주에 의
한 평가서 부실작성 예방-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평가서 초안 단계
에서 전문가,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 시민단체
등과 현지조사,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사
업의 주요 평가·보완사항을 적극 제시하여
본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시 실시
계획서 등 협의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당초 예측·영향
저감 방안과 사후 조사결과를 비교하도록 하
여, 당초 협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
류·검증 체계 확립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많은 발전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로서 그 역할을 다해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사전예방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모든 참여주체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를 때 가능하
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4.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신뢰
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